

전용용기 검사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① 상호	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		④ 제조업등록번호
	⑤ 주소(제조시설 소재지)		

검 사 신 청 개 요

⑥ 종류	⑦ 용량(ℓ)	⑧ 생산일자	⑨ 검사 희망일자
[] 봉투형용기			
[] 상자형용기	[] 골판지류		
	[] 합성수지류		

⑩ 구조·규격(cm)	⑪ 원료/재질	공급예정사항	
		⑫ 공급 예정업소	⑬ 공급 예정수량(매, 개)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) 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. 전용용기의 구조도 3. 전용용기의 원료·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
------	---	-----

작성요령

1. 전용용기의 종류(봉투형, 골판지류, 합성수지류)별로 전용용기 검사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⑥란은 검사받고자 하는 전용용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√ 표를 합니다.
3. ⑩란은 전용용기 규격(봉투형의경우 폭(cm)×길이(cm), 상자형용기가 직육면체 모양일 경우 가로(cm)×세로(cm)×높이(cm), 원통형의 경우 지름(cm)×높이(cm), 위·아래 지름이 다를 경우 윗면지름(cm)×아랫면지름(cm)×높이(cm)을 적어야 합니다.
4. ⑪란의 원료·재질은 전용용기에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5. ⑫, ⑬란은 공급예정인 업소별 공급 예정량을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